

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22조의4제5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9조의4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	법 제19조의4제4항제2호	지정취소		
다.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9조의4제4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1)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	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2)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				